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가 지각하는 시설의무이행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분석

주 효 진 · 박 은 주 (꽃동네대학교)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시설 운영자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장애인의 자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즉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이 이용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 이용자의 자립향상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회의 예비조사와 사전조사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보면, 시설의 의무이행 중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의무이행은 전체자립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변수에 있어서는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이행과 거주·생활지원 의무이행은 신변자립의지에,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이행은 사회적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심리적 자립의지는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았고, 시설의무이행 중 자기결정권보장 의무이행은 종속변수인 자립의지의 어느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 장애인시설의 복지정책이 인권관점의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인권보호의 영역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의 서비스의무는 전통적 기능인 주거·일상생활지원 의무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와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 서 론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로서, 자립은 장애인복지의 핵심이념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자립개념은 2000년 초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장애인들을 비롯하여 주변 환경변화에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의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법·제도의 개선¹⁾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립생활패러다임의 시작시기와 급속한 확산을 고려하면 정부의 법·제도에 대한 반영은 시기적으로 아주 늦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정책들 역시 속도측면에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체성과 체계성이 미비하여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가 없다.

1)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체계는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법률 제·개정, 활동지원서비스제도화,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선, 탈시설화 운동과 장애인전환센터 운영 등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정책과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점차 자립생활지원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강우진 외, 2011).

장애인 정책의 변화는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한 축을 이루어 온 장애인거주시설에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장애인거주시설²⁾은 이에 대한 대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시설의 의무로 인식되거나 규정되는데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는 당사자가 누가되느냐에 따라 의무내용과 이행정도의 인식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인 정부기관, 클라이언트, 직원, 후원자,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에서 시설에 부여된 의무는 다를 수 있고, 시설의무의 범위 또한 넓기 때문이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충실한 의무이행은 책임성의 확보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용자의 자립실현을 돕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반면에 의무불이행은 서비스 질의 저하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인권문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시설 운영자의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장애인의 자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³⁾ 즉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이 이용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 이용자의 자립향상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참여자에 지적장애인을 포함하였는데 그 이유는 선행연구들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관점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고(김교연, 2007; Schalock et al. 2005), 우리보다 앞서 탈시설화와 거주서비스 개혁을 추진해 온 서구 복지국가들의 지적장애인 거주서비스에 관한 연구들이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과정과 질을 평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용득·김숙경, 2008). 하지만 무엇보다 시설 운영자의 의무규정은 시설 기능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가치가 장애인의 자립에 있다고 볼 때,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과의 상관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므로 당사자의 관점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을 서비스 특성별로 분류하여 요인으로 설정한 후 각 요인들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립의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조항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용자의 시각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장애인거주시설은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이 용어가 바뀌면서 법적용어로 사용되었다. 거주시설의 종류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3)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는 범위가 넓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규정에서 정한 이용자의 서비스 영역으로 제한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고, 대상체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립될 수 있다(임성만, 2000).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 또는 거주시설)이란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말한다. 거주시설은 그 기능과 역할이 체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운영되어 오다가 최근에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체계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방향을 모색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어 시설의 기능에 대한 합의된 명제와 이를 실현해 가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의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기존의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었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포함함으로써 시설의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거주시설 종류별 법적 기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⁴⁾에 나타나 있듯이 이용자들이 거주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법은 이전 법과 비교해 볼 때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에 조금씩 부응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법의 거주시설의 유형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단기 거주시설을 제외하면 이용자의 대다수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해오고 있는 사람들이다(물론, 공동생활가정과 단기 거주시설 이용자 중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전전하며 오랜 기간 시설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오랜기간 시설의 집단화와 획일화, 그리고 무기력을 경험해 온 이들이 의존적 삶에서 벗어나 단기간에 자립적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자립은 장애인복지에 있어 필수적 과제인 만큼 이용자의 자립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찾고 개발하기 위한 시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규정 이행을 통해 거주시설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의 내용은 운영자와 직원들로 하여금 시설의 기능과 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거주

4) 장애인거주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을 말한다.

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중요한 기재작용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은 장애인복지의 이념이자 가치인 자립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

사회복지조직은 대표적인 비영리조직으로 조직에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공익기관으로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조직의 의무는 의무부여자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 의무내용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의무 범위 또한 매우 넓은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책임성은 정부기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의 내·외적 이해관계자, 즉 클라이언트, 직원, 후원자,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되기도 한다.⁵⁾ 만일 사회복지조직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책임성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저하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조직의 책임성은 여러 측면이 존재하지만 전통적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가장 핵심이 되어왔다(Cutt & Murray, 2000; 노연희, 2007). 따라서 정부와 사회복지조직의 관계에서 책임성의 주요내용은 정부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위임받은 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률 및 제반 규정을 의무로 한다(Dicke, 2002; 노연희, 2007). 하지만 이러한 책임성의 확보는 사회복지조직만의 의무라기보다는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와 사회복지조직 간의 상호의무와 공동의 책임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거주시설 간의 관계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법 제60조의 4)⁶⁾를 거주시설의 의무로 설정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거주시설의 의무범위는 매우 넓은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내용은 이용자의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인권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조항의 내용으로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과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 이용자에 대한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설 운영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장애인거주시

5) Brown과 Moore(2001)는 사회복지조직은 기부자에게는 기부된 자원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책임이 있고, 클라이언트에게는 욕구를 반영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조직의 미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파트너와 동맹자에게는 공공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활동에 대한 위원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차지연, 2010 재인용).

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법 제60조의 4)는 ‘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60조의4 제1항), ‘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60조의4 제2항), ‘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60조의4 제3항)를 각 항에 명시하고 있다.

설 인권보호 권장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적용하였고, 개정법을 통해 이와 연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는 시설 운영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존의 권장수준을 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조직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3. 자립의지

자립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립과정이라는 시간적 요소를 필요로 하므로 종단적 연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실증연구의 대부분이 횡단연구로 이루어져 있고, 본 연구 또한 횡단연구로 진행됨에 따라 자립 정도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립 달성을 위한 필수요인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의지를 강조하는 선행연구들(구본선·김효선, 1983; 정은주, 1998; 이경혜, 2000; 서화자, 2002; 임은주, 2004; 정병권·이선우, 2011)의 견해에 착안하여 자립의지의 정도가 자립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장애인들에게 있어 자립은 부분적 자립보다는 전인적 자립이 요구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자립정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된 주장으로 구본선과 김효선(1983)은 자립은 아무리 많은 전문요원과 주변사람들이 개인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해도 개인이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부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체적 장애는 개인의 관심이 없이도 치료될 수 있으나 수용이 없는 장애로 인해 받는 정신·사회적 압력은 그 장애를 능가하는 장애로 발전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극을 증가시켜 주는 심리적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서화자(2002)는 심리적 자립과정 없이 효과적인 재활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재활을 위한 필수요인으로서 자립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Halvorsen(1998)도 클라이언트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자립동기의 유발을 들고 있다.

자립의지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Halvorsen(1998)은 자립의지란 자립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심리적인 과정이나 욕구로서 변화상황에 대한 자신감 및 자아통제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자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谷口明廣·武田康晴(1999)은 심리적 자립은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자립의지란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신변·심리·사회적 자립, 즉 전인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의지'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적 자립은 경제·사회·주거환경적 자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자립유형의 분류는 연구의 자립정의에 따라 硯川眞旬(1990)의 자립분류⁷⁾ 개념이 적합할 것으로 판

7) 硯川眞旬(1990)의 자립분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신변 자립: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은 보호자를 곁에 붙여 두는 것이다. ② 정신적 자립:

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4.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실증연구는 재가장애인 또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장애인거주시설(법 개정 전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실증연구는 일부 연구(박승탁, 2010; 정병권·이선우, 2011 등)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광주·부산·인천광역시 등)의 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육구 실태조사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최영광, 2001; 강우진 외, 2011; 2012; 조한진 외, 2012)가 현상이나 상태 등을 기술하거나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장애인 당사자가 연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앞서의 선행연구와 같지만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제시를 위해 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고 있다.

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병권·이선우(2011)는 자립생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이 있는 경우가, 수단적 일상생활(IADL)에 도움이 적게 필요할수록, 자기결정권 보장정도가 낮을수록, 지역시설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이용자의 자립의지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최영광(2001)은 거주시설의 장애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시한 연구로, 연구결과에서 일상생활수준이 독립적일수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자립생활기반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립기초환경 요인으로 재활프로그램 만족도, 지역사회교류빈도, 사회적 관계성은 자립생활기반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재활프로그램의 참여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시설 이용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은주(1998)의 연구는 회귀분석결과 환경특성변수 중 서비스 수혜종류, 거주유형, 장애인 단체 참여 여부, 사회적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되고 있는 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육구 실태조사의 결과들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조한진 외, 2012)가 전국의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용자들은 시설에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외출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23.08% (1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3.44%(2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1.49%(3위)로 나타나 거주시설이 외출에 대한 보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에 대한 ‘정보취득’

일의 결정과 선택이 자기 자신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개념이다. ③ 경제적 자립: 스스로 일함으로써 노동의 댓가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 또한 일은 못하더라도 연금이나 생활보호비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개념이다. ④ 사회적 자립: 사회질서 또는 도덕을 몸에 익혀 사회나 개인이 자기를 도와준 것처럼 자신도 사회나 개인에게 공헌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즉 한 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라는 구별 없이 사회에 공헌하고 생활한다는 개념이다. ⑤ 주거환경적 자립: 자신에게 알맞은 주거형태를 결정하여 생활하는 것 또한 시설이나 내부장치나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개조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임민순, 1991).

에 있어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분석결과에서는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서비스가 분리되어 서비스 호환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용자의 자립지원 정책 방안으로 외부와의 소통 의무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로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및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시설의 일상적 이용보장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실태 및 욕구조사⁸⁾ 결과는 자립의 의미에 대한 응답의 1순위로 전체 응답자의 21.2%가 ‘나의 권리를 찾아 행사하는 것’으로 응답한데 반해 일반적으로 자립의 개념에서 중시되는 경제적 자립은 18.3%로 2순위로 나타났다⁹⁾. 또한 중증장애인일수록 ‘나의 권리를 찾아 행사하는 것’이 자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제한받고 박탈당하는 경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강우진 외, 2011).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는 장애인의 자립에서 있어 인권영역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결과로, 임은주(2004)는 여성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성역할 태도, 건강상태, 경제력 정도로 나타났고, 김순곤(2002)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자존감, 친구지지, 기관서비스가 중증지체장애인의 전체자립에, 자존감은 신체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에, 그리고 자존감 및 친구의 지지가 심리적 자립에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정보화 자립에는 기관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상록(2007)은 중증뇌성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자립에는 일상생활 활동능력과 친구의 지지, 그리고 권리침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자립에는 친구의 지지가, 사회적 자립에는 친구의 지지와 권리침해, 정보화 자립에는 친구의 지지와 타인의 지지, 신체적 자립에는 가족의 지지와 권리침해, 경제적 자립에는 일상생활능력과 친구의 지지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용화(2008)의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권리인식정도가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은 김혜임(2012)의 연구에서 전체자립의지에, 김순곤(2002)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립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은 정은주(1998), 김순곤(2002), 김혜임(2012)의 연구에서 50대 이상이 평균점수가 가장 낮고 각각 40대, 20대, 30·40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은 김순곤(2002)의 연구에서 무학과 고졸 간에, 무학, 초졸과 대졸 이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록(2007)의 연구에서는 중졸, 고졸, 대학원 이상과 무학 간에, 중졸, 고졸과 대졸 이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학이 평균점수가 가장 낮고 대학원 이상이 평균점

8)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욕구 조사(2011)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전수와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의 전수 9개소를 대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을 실시한 조사로 총 1,051명의 장애인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조사결과는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자립수행능력, 자립생활실태 및 욕구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9) 구체적으로는 1급-4급까지가 나의 권리를 찾아 행사하는 것이 자립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5급-6급은 경제적 자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강우진 외, 2011).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월수입과 경제력은 이상록(2007)과 임은주(2004)의 연구에서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경혜(2000)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특성에 있어서는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욕구조사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자립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과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건강관리능력>정신적 자립능력>사회적 자립능력 순으로 나타났고,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건강관리능력>사회적 자립능력>정신적 자립능력 순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자립능력과 정신적 자립능력의 평균이 각각 2.90, 2.89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간 건강관리능력에 있어 장애정도가 가장 중증인 1급이 다른 장애등급과 비교하여 낮은 점수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적 자립능력에 있어서는 6급이 정신적 자립능력 점수가 가장 높고, 1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립능력에 있어서는 1급의 중증장애가 6급의 경증장애보다 사회적 자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조사설계 및 분석틀의 설정

1. 변수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는 법적 의무(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를 칭한다. 따라서 관련 법 조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조항의 내용을 개념별 4개의 시설의무로 범주화하여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각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¹⁰⁾ (이하 인권보호 권장기준)의 내용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인권보호 권장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동 법과 연계되어 있다. 각 도구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하였다.

각각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는 인권보호 권장기준에서 정하는 장애인시설 이용자의 기본권리 중 평등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 연령이나 성별에 차별 없이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 비장애인이 가정이나 일반사회에서 대우받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념정의 외에 타당도 조사에서 현장실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생존권의 내용 중 신체·정신적 안전보장의 권리를 포함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성된 문항은 '시설생활에 전반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차별', '이의제기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현 과 이의제

10)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자의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지자체와 시설 운영자, 직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기준에서 정하는 시설 이용자의 기본 권리는 평등권,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문화권, 법적차적 권리이다.

기 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용자에 대한 학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근성' 등 총 6문항이다. 거주·생활지원 의무는 인권보호 권장기준에서 정하는 시설 이용자의 기본권리 중 생존권과 문화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존권은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사항, 즉 의식주 보장, 의료 및 건강보장, 물리적 안전보장의 권리를 포함하였고, 문화권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삶에 참여하는 등 일상적인 문화활동에서의 권리, 문화적 매체 이용 및 문화시설과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자유권의 내용 중 사생활보호, 자유롭게 외부와 소통할 권리, 표현 및 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문항을 본 영역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분류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문항은 '여가활동지원', '식사육구 반영', '시설의 안전성 및 안락성', '건강관리', '사적관계유지', '사생활보장'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 7문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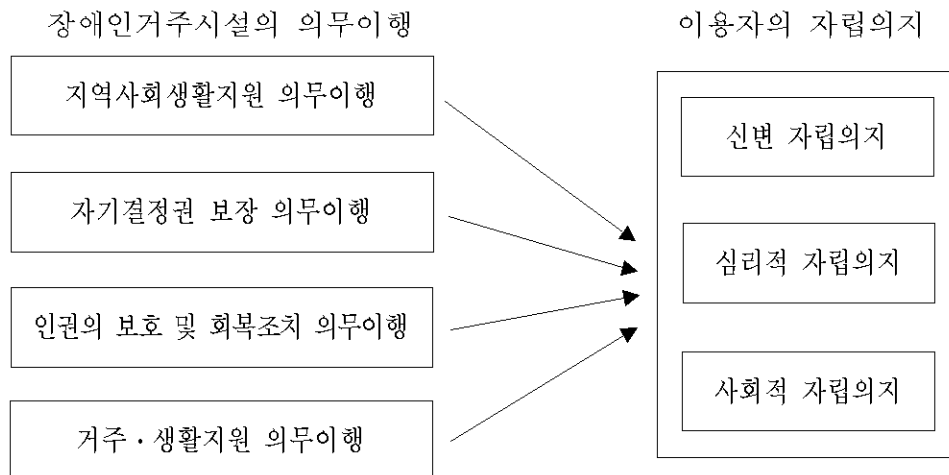
자기결정권보장 의무는 인권보호 권장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이용자의 기본 권리 중 자유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문항은 '머리모양·화장·의복 등에 대한 선택', '서비스 계획에 대한 의사표명 및 의견 반영', '소지품의 관리 및 처분', '간식 구입 선택' 등을 내용으로 총 6문항을 구성하였다.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는 인권보호 권장기준에서 정하는 시설 이용자의 기본권리 중 사회권 및 정치권에 해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보았다. 즉 완전한 사회통합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권리, 교육권, 가족을 이룰 권리, 노동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이를 위한 정보제공 및 접근성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본 영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타당도 검사과정에서 정치권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제거되어 사회권의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여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와의 교류지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총 4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립의지의 정의로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신변·심리·사회적 자립, 즉 전인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의지'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의 개념적 정의로 볼 때, 자립의지 형태는 硯川眞甸(1990)의 자립분류 정의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의 자립분류 기준에 따라 자립의지의 요인들을 설정하였고, 요인들의 각 문항별 점수평정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하였다. 각각의 요인들을 펴보면, 신변자립의지는 일상생활에 있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수행하고, 필요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구성요소로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자립의지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 어려움에 대한 극복의지, 장애의 수용, 가치 있는 존재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 등을 자립의지 구성요소로 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립의지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주거형태 결정 및 경제생활의 영위에 대한 자립적 판단, 자립적 행동, 미래에 대한 자립의지를 구성요소로 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분석틀의 설정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가 인식하는 시설의 의무이행이 당사자들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와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설정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3. 표본의 선정 및 특성

연구의 표본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장애인거주시설 중 법인에서 운영하는 17개 시설(지적장애인거주시설 3개, 지체장애인거주시설 3개, 시각·지적장애인거주시설 1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8개)의 이용장애인 15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부실한 설문지 17개를 제외한 135개의 설문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선정은 임의표집(convenience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설 이용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의 동반으로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자기표현이 가능한 이용자를 표본으로 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조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3월 18일부터 2013년 5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문문항에 대해서 조사자와 응답자 1:1 형식의 직접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48.9%(66명), 남성이 51.5%(69명)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은 30대가 29.6%(4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대 24.4%(33명), 40대 20.7%(2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39.3%(5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졸과 무학이 각각 20.7% (28명)의 동일한 비율로, 중졸 16.3%(22명), 대졸 1명으로 나타나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의 교육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졸의 경우 대학졸업 이후 시설 이용을 하게 된 것을 감안해 볼 때 거주시설은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기회가 주어지는 데는 현실적으

로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¹¹⁾의 참여 여부는 그렇다 42.2%(57명), 아니다 57.8%(78명)로 나타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절반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의 중복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응답분석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57%(78명)가 지적장애, 38.5%(52명)가 지체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은 지적장애 혹은 지체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급수는 1급이 45.9%(62명), 2급이 35.6%(48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1·2급 중증장애인의 응답비율이 81.5(110명)%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독립변수인 장애인거주시설의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모두 3단계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조항을 범주로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권장기준 지침(보건복지 부) 내용을 구조화하여 연구진들이 직접 문항으로 추출하였다. 이어 2·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출한 문항을 현장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1회씩 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진행절차 및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인거주시설 의무문항의 개발과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거주시설 의무범주 및 내용 추출	최도의 타당도 검정: 내용타당도	
참여자	본 연구자	현장실무자 7명	전문가 9명(장애인거주시설참여매뉴얼개발에 참여한 현장연구단)
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검토 · 연구자의 실무 경험 · 현장실무자의 도움	· 설문조사 및 면접 (이메일, 전화인터뷰) - 1단계의 문항에 대해 3점으로 평정 - 4인 이상이 1점 혹은 2점으로 평정한 문항 제외	· 2단계에서 작성된 설문지 문항의 적합도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 · 논문의 방향 및 실효성 등 내용전반에 대한 기술적 자문

11) 본 연구에서 경제활동은 취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기타 고정적 수입이 있는 소일거리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결과	- 거주시설무 범주 결정 -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의 4(거주시설운영자의무)에 명시된 4가지 의무 형태로 범주화 - 개별의무내용 채택 및 범주별 분류: 총 36개 의무 내용 추출	14개의 문항 제외 - 총22개 문항 사용이 결정되었으나, 3개 문항에 대해 각각 독립문항으로 분류 - 총25개 문항으로 설문 구성 - 구성개념의 속성에 따른 문항 간 조정 - 설문의 배열순서 조정	- 전체 25개 문항 중 2개 문항 제외: 총 23개 문항 채택 - 설문문항의 사용단어 및 문구 수정
	* 요인별 채택문항 - 거주·생활 11개 - 자기결정 12개 - 인권보호·조치 6개 - 지역사회생활 7개	* 요인별 채택문항 - 거주·생활 9개 - 자기결정 6개 - 인권보호·조치 6개 - 지역사회생활 4개	* 요인별 채택문항 - 거주·생활 7개 - 자기결정 6개 - 인권보호·조치 6개 - 지역사회생활 4개

2) 사전조사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 오류를 점검하고 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거주시설 4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이용자 23명에 대해 이루어 졌으며, 조사형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사전조사에서는 설문문항 점검 및 수정, 조사대상과 시설의 상황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면접지침내용의 수정 및 추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특히 낮은 사람과 설문조사라는 특별한 환경에 대한 긴장이 응답자들에게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공감대(rapport)형성 부분에 많은 고려를 하였다.

3) 척도의 기초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거주시설 의무이행 영역과 자립의지 유형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의 기준으로 고유값이 1.0 이상이고, 요인적재치가 0.4 이상인 것을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요인분석결과 거주시설 의무이행 영역은 14개 문항에 대해서 4요인으로 묶이었고, 자립의지 유형은 8개 문항에 대해 3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표 3>의 거주시설 의무이행의 타당도 검증결과에서는 구성요인들의 전체분산비율은 55.584%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이행 3개 문항, 자기결정권보장 의무이행 4개 문항, 인권 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이행 4개 문항, 거주·생활지원 의무이행 3개 문항으로 구분되었다.

〈표 3〉 장애인거주시설 의무이행의 타당도 검증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지역사회생활 지원의무이행	자기결정권보장 의무이행	인권보호 및 회복 회복조치의무이행	거주·생활지원 의무이행
문5	.659	.073	.188	-.057
문7	.830	.006	-.105	.227
문8	.725	.259	.143	.093
문15	.053	.657	.098	.219
문16	.144	.756	.086	-.090
문17	.192	.644	.166	.190
문18	.003	.697	-.059	.061
문27	-.004	.026	.761	.106
문28	.164	.074	.590	.328
문29	.299	.363	.508	.088
문30	.037	.040	.754	-.122
문43	.116	.098	-.077	.764
문45	-.071	.044	.290	.678
문46	.354	.279	.050	.551
고유치	1.571	3.636	1.360	1.214
분산(%)	11.225	25.974	9.713	8.672
누적분산(%)	37.199	25.974	46.912	55.584

〈표 4〉의 자립의지의 판별타당도 검증결과 구성요인들의 전체분산비율은 65.815%로 나타났고, 신변자립의지 2개 문항, 심리적 자립의지 3개 문항, 사회적 자립의지 3개 문항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자립의지의 판별타당도 검증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신변자립의지	심리적 자립의지	사회적 자립의지
문47	.827	.193	.126
문48	.842	.122	.032
문49	.233	.695	.204
문50	.085	.799	.013
문51	.122	.834	.096
문53	.015	.404	.525
문55	.274	.001	.816
문58	-.045	.091	.818
고유치	1.147	2.828	1.291
분산(%)	14.332	35.351	16.132
누적분산(%)	65.815	35.351	51.48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의 값이 사전조사와 본조사에서 거주·생활지원 의무 이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요인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결과

요인	사전조사		본조사	
	항목수	신뢰도계수	항목수	신뢰도계수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 이행	3	0.801	3	0.658
자기결정권보장 의무 이행	4	0.678	4	0.678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 이행	3	0.778	4	0.653
거주·생활지원 의무 이행	3	0.741	3	0.534
신변자립의지	2	0.743	2	0.629
심리적 자립의지	3	0.781	3	0.733
사회적 자립의지	3	0.890	3	0.615

2. 영향력 분석결과 및 논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만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모형1은 종속변수인 신변자립의지, 심리적 자립의지, 그리고 사회적 자립의지 각각에 대해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장애유형, 장애등급, 경제활동참여, 월소득을 투입한 결과이며, 모형2는 독립변수인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이행, 자기결정권보장 의무이행, 그리고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이행과 거주·생활지원 의무이행을 추가 투입한 결과이다.

〈표 5〉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과 전체자립의지에 대한 검증

		전체자립의지	
		모형1	모형2
통제변수	(상수)		
	성별	.143	.112
	연령	.002	-.069
	학력	-.004	-.043
	장애유형	.153	.152
	장애등급	.085	.085
	경제활동참여	-.167*	-.134
	월소득	.079	.079
독립변수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이행		.119
	자기결정권보장 의무이행		.116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이행		.210**
	주거·일상생활지원 의무이행		.124
	R ²	.065	.214
	Adj. R ²	.011	.141
	F	1.209	2.922***

주 1) 성별(남 1, 여 0), 장애유형(지적장애 1, 지체장애 0)과 경제활동참여(참여 1, 미참여 0)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음.

주 2) *p<0.1 **p<0.05 ***p<0.01

<표 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F=2.92(p<.01)$ 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고, 설명력(R^2)은 .214로 전체자립의지의 총 분산 가운데 21.4%를 설명하고 있다. 통제변수만 회귀모형에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R^2)은 .065로 전체자립의지의 총 설명력 가운데 6.5%를 설명하였으나, 독립변수인 장애인거주시설의무이행이 회귀모형에 투입됨으로써 설명력은 14.9%가 높아졌다. 개별변수의 유의성에서는 인권보장 및 회복 조치 의무이행이 $\beta=.210(p<.05)$ 으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반면,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이행과 자기결정권보장 의무이행, 주거·일상생활지원 의무이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 중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로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은 것, 이용자가 쉽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및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 등에 대한 이행정도가 전체자립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용자의 자립의지 향상에 있어 무엇보다도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6>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과 신체 자립의지, 심리적 자립의지, 사회적 자립의지에 대한 검증

	신변자립의지		심리적 자립의지		사회적 자립의지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통제변수 (상수)						
성별	.055	.007	.174	.162	.114	.137
연령	.089	.001	.086	.064	-.256***	-.260***
학력	.035	-.010	-.050	-.065	-.038	-.043
장애유형	.127	.102	.105	.108	.204**	.237**
장애등급	.068	.070	.007	.001	.050	.057
경제활동참여	-.129	-.079	-.160	-.151	-.035	-.046
월소득	-.011	-.004	.056	.055	.175*	.165*
독립변수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이행		.030		.062		.163*
자기결정권보장 의무이행		.107		.015		.086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이행		.262***		.088		-.034
주거·일상생활지원 의무이행		.225**		.162		-.062
R^2	.041	.234	.064	.082	.148	.180
Adj. R^2	-.014	.162	.011	-.004	.099	.103
F	.754	3.271***	1.201	.958	3.024***	2.350**

주 1) 성별(남 1, 여 0), 장애유형(지적장애 1, 지체장애 0)과 경제활동참여(참여 1, 미참여 0)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음.

주 2) * $p<0.1$ ** $p<0.05$ *** $p<0.01$

<표 6>을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이 신변자립의지의 총 설명력 가운데 23.4%($F=3.271$, $p<.01$)를 설명하고 있다. 통제변수만 회귀모형에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R^2)은 .041로 신변자립의지의 총 설명력 가운데 4.1%를 설명하였으나,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이 회귀모형에 투입됨으로써 설명력은 18.3%가 높아졌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용자들의 신변자립의지가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개별변수의 유의성에서는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이행이 $\beta=.262(p<.01)$ 이고, 주거·일상생활지원 의무이행이 $\beta=.225(p<.05)$ 로 각각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반면,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이행과 자기결정권보장 의무이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이행은 전체자립의지에 이어 신변자립의지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알 수 있다. 또한 주거·일상생활지원 의무이행인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 가족을 비롯한 외부방문자를 시설내·외에서 자유로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는 것 등이 이용자의 신변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에서 일상생활지원 의무 중 ‘자유로운 출입 허용’에 대한 이행 평균점수가 4.16로 일상생활지원 이행 평균점수 4.45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신변자립과의 상관관계($r=.225, p=0.09$)에서도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통제를 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안전에 대한 기준도 천차만별이어서 필요이상의 통제로 인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장기성, 2007).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립생활 욕구실태조사(조한진 외, 2012)의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외출보장에 대한 개선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신변자립 향상을 위한 요소로 외출보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 결과에서는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서비스가 분리되어 서비스 호환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 정책 방안으로 외부와의 소통의무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사회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방·사회화가 필요하고 여기에 시설 이용자의 지역사회시설의 일상적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로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및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시설의 일상적 이용보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조한진 외, 2012).

<표 6>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이 심리적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실시한 회귀분석결과 F-검정에 의한 p값이 .488($F=.958$)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설의 의무이행과 심리적 자립의지와 영향력은 설명되지 않는 않았지만,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요인은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자립적 삶을 위하여 심리적 의무이행에 대한 시설의 지원노력은 책임성의 확보 차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심리적 자립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견해¹²⁾로 볼 때, 심리

12) 심리적 자립과 관련한 연구자들의 주장으로 이경혜(2000)는 신변자립은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신적 자립은 이용자 중심에서 서비스가 고려되지 않으면 향상될 수 없다고 하였고, 구본선·김효선(1983)은 개인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재활은 개인의 부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리적 측면인 재활동기를 강조하였다. 박소현(2002) 또한 높은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이 정신적 자립도 높다고 하였다.

적 자립은 이용자 측면에서의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다른 형태의 자립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자립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자립동기 부여를 위한 시설의 노력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수용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자립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를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이 사회적 자립의지의 총 설명력 가운데 18%($F=2.350$, $p<.05$)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통제변수만 회귀모형에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R^2)은 .148로 사회적 자립의지의 총 설명력 가운데 14.8%를 설명하였으나, 독립변수인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이 회귀모형에 투입됨으로써 설명력은 3.2%가 높아졌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용자들의 사회적 자립의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변수의 유의성에서는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이행이 $\beta=.163(p<.1)$ 으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반면, 자기결정권보장 의무이행과 인권보장 및 회복조치 의무이행, 주거·일상생활지원 의무이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장애유형이 $\beta=.237(p<.05)$ 로, 월소득이 $\beta=.165(p<.1)$ 로 각각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에 비하여 지체·뇌병변, 시각장애인의 자립의지가 높으며, 월소득이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또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beta=-.260(p<.01)$ 로 부(-)의 방향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자립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사회적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립의지 향상을 위해서는 연령, 장애유형, 월소득 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설계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인 취업, 결혼 등의 사회통합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와의 친근한 관계의 유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이용자의 사회적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백은령·임성만(2006)의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이성교제 및 결혼, 전화통화, 외출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 주거시설의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병권·이선우(2011)는 서비스기관의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 변화와 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빠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그 실행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원인은 이용자와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차이에서 부터 크게는 지역 간의 특성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역사회생활지원에 대한 역할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집단들이 상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과정에서 지역사회 자립의지에 관한 문항 중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문항은 응답자의 인터넷 사용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보탐색이 가능한 응답자 중 다수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응답자와 비교하여 해당 문항에 대해 시설의 의무를 낮게 인식함과 동시에 의무이행 수준 또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응답자의 다수는 시설의 정보제공이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제공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답하였다. 즉 시설의 정보제공 의무를 높게 인식하든 낮게 인식하든 시설의 제공수준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조한진 외(2012)의 조사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자의 66.98%가 시설 퇴소 및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 취득에 있어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 취득에 있어 시설 이용장애인이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있어 정보접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정보접근 기회가 증진될 수 있는 방향에서 관련제도의 검토와 더불어 시설의 정보화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와 <표 6>의 결과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의무이행 중 자기결정권보장 의무이행은 자립의지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응답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자기결정권보장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에 대한 인식도와 이행도의 차이를 크게 지각할수록 이용자의 욕구는 커지게 되고, 따라서 자립의지에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반해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시설의 자기결정권보장 의무의 인식도와 이행도의 차이¹³⁾를 작게 지각함으로써 자립의지에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V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이 이용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용자의 자립향상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법규를 토대로 개념을 조작화하고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분석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시설의 의무이행이 전체자립의지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 검증을 위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이행의 하위영역 중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는 전체자립의지에,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와 거주·생활지원 의무는 신변자립의지에,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와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연령과 월소득, 그리고 장애특성 변수인 장애유형이 사회적 자립의지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책이 복지정책에서 인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적 자립의

13)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권보장 의무는 인식도와 이행도의 차이 점수가 가장 작고($M=.34$),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 인식도와 이행도의 차이 점수가 가장 크게($M=.98$) 나타났다.

지는 거주시설의 의무이행 보다는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거주·생활지원 의무이행은 의식주와 관련된 시설의 주기능 보다는 ‘자유로운 출입 허용’, ‘시설내·외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시설의 개방·사회화와 관련된 문항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자립의지는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시설의 의무이행 중 자기결정권보장 의무이행은 종속변수인 자립의지의 어느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주거시설의 기능으로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회복 조치 기능이 무엇보다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인권보장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인권적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 보도 등의 실태보고는 거주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임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근래 장애인당사자의 권리인식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거주시설의 기능으로 인권보호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적 삶을 위해서는 시설이 지역사회생활을 공유하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의 서비스는 전통적 기능인 주거·일상생활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생활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자립패러다임에서 요구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 정립에 대한 구체적 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 수많은 정책과 관련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설의 기능에 대한 합의된 명제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의 혼돈은 이용자와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등 관계자들 간의 인식차이를 크게 하여 시설의 의무 불이행으로 지각되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기능에 대한 모형구축 마련이 시급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이용자를 비롯한 관계인들 간의 상호호혜적 차원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제도적 측면에 주고 있는 시사점으로는 거주시설 이용자의 측면에서 평가된 결과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법 제6조의 4)조항의 제도적 보완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련 조항은 정부의 통제 기제로서 시설의 기능 정립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가치가 장애인의 자립에 있다고 볼 때, 법에 명시된 시설의 의무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이 보다 성공적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평가를 토대로 나타난 자립향상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로부터 제도에 보완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으로는 시설내 차별, 학대와 관련한 조항을 구체화하고, 조한진 외(201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와 외부와의 소통강화에 대해 시설의무로 명시화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시설의 의무이행과 전체자립의지에 대한 검증결과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시설의 정책이 욕구관점의 복지정책에서 보다 포괄적 개념인 인권관점의 정책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거주시설의 의무영역 중 이용자의 자립의지에 가장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근래 이루어지고 있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실증연구들이 장애인의 자립영향요인으로 인권영역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의의가 크다 하겠다. 둘째,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의 구분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것은 이전의 다수의 거주시설의 관련연구들이 지적장애인을 제외하고 있고, 경증위주의 이용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렇게 설계한 배경으로는 장애인복지에서 자립패러다임 도입 이후 지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주변환경의 변화들로 인해 그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설계가 아무리 잘된 조사라고 할지라도 관계인에 의한 평가는 당사자와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즉 특정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의 배제는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주시설의 평가시스템 또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에 대해 공식적 통계기제인 장애인복지법 조항을 의무범주로 설정한 최초의 실증연구이며, 관련 법조항의 타당성에 대해 서비스 수혜자인 이용자의 측면에서 검토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도구에 대한 내·외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조사에서 사용한 도구의 문항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의무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입·퇴소과정과 퇴소이후의 시설의 의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 내용이 의무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적타당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가 이용자 측면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과 자립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가평가라는 주관적 평가방식에 의해 자료가 수집·분석되었고, 이로 인해 실제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무이행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이 보기에는 의무이행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스스로의 기대치가 높아서 낮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의 의무이행과 자립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이행도와 인식도 양자 간의 조사를 병행하여 통합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우진 · 이은미 · 이채식. (2011).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경기복지재단정책 연구보고서.
- 김교연. (2007). 「지적장애인과 자기결정원리: 이론과 실천」. 2007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순곤. (2002). 「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본선 · 김효선. (1983). 재활동기 수준과 그 변화에 대한 연구. 「재활연구」, 9: 49-58.
- 김미옥 · 정진경 · 김희성. (2008).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 연구 : 장애인당사자와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3: 389-422.
- 김용득 · 박숙경. (2008).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60(4): 79-103.
- 김혜임. (2013). 「장애인그룹홈 거주자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3년 한국복지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노연희. (2007).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책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책임성의 주체, 대상 및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3: 35-64.
- 다니구찌 아끼히로. (1999). 「자립생활을 즐겁고 구체적으로」. 이기량 · 최경익 역. 서울: 나눔의 집.
- 박소현. (2002). 「정신지체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탁. (2010). 그룹홈 거주 지적장애인 자립생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0(4): 323-354.
- 백은령 · 임성만. (2006). 거주시설에서의 이용자 참여실태와 과제. 「재활복지」, 10(3), 27-64.
- 서화자. (2002).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자립의 심리적 구조론 연구. 「사회과학논집」, 18: 227-251.
- 유동철 · 김미옥 · 서정희 · 김경희. (2010).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보장 방안 마련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경혜. (2000).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록. (2007). 「중증뇌성마비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화. (2008).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서비스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성만. (2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자질」. 제1회 장봉혜림재활원 직원연수회 자료집.
- 임은주. (2004). 「여성장애인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병권 · 이선우. (2011). 지체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자립생활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6: 139-154.
- 정은주. (1998). 「지체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한진 · 강민희 · 박옥순 · 염형국 · 임소연 · 정희경 · 허숙민. (2012). 「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 최영광. (2001). 「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초환경 탐색」. (계간)사회복지, 150: 113-138..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 Brown, L. D. & Moore, M. H. (2001). Accountability, strategy,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3): 569-587.
- Cutt, J. & Murray, V. (2000). *Accountability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in non-profit organizations*. London: Routledge.
- Dicke, L. A. (2000). Ensuring accountability in human services contracting. Can stewardship theory fill the bill?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2(4): 455-470.
- Halvorsen, K. (1998). Symbolic purposes and factual consequences of the concepts self-reliance and dependency in contemporary discourses on welfare. *the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Welfare*. 7: 56-64.
- Schalock R., Verdugo M., Jenaro C., Wang M., Wehmeyer M. & Lachapelle Y. (2005). A cross-cultural study of core quality of life domains and indicators: an exploratory analysi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10: 298-311.
- 硯川眞旬. (1990). 「障害福祉」. 東京: 中央法規出版社.